



LEGAL UPDATE
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6-2호

Apr. 2026

행정지도

- 금융감독원,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금융소비자 사전 안내 가이드라인
(행정지도 예고, '26.4.7.) -

행정지도 취지

- 보험계약 유지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**보험금 심사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경우** 소비자에게 **사전안내**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예방

가이드라인 내용

- 동 가이드라인은 **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관한 심의절차, 소비자 안내방법**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**(심의절차)** 심사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경우 **보험금 심사부서, 소비자보호 유관부서, 법무부서**의 임원이 심의에 참여하고, **임원 이상이 최종 의사결정**을 하여야 함
 - **(안내대상)**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심사기준이 대법원 판례, 행정지도 반영 등으로 인한 것일 경우(중요한 심사기준 변경) 해당 계약의 **모든 피보험자**(또는 법정대리인)에게 **안내**해야 함(의료지침 등을 근거로 변경할 경우에도 안내 가능)
 - **(안내방법)**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 시 **홈페이지에 공시**하고, **알림톡, 앱푸쉬, SMS 등 2개 이상의 채널**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야 함. 변경된 기준은 안내 후 **최소 3영업일 이후에 시행**해야 함.

향후계획

- 의견수렴(4.7.~4.27.)을 거쳐 '26.6월부터 시행예정

(원문 링크)

<https://www.fss.or.kr/fss/job/admnPrvntc/view.do?seqno=271&menuNo=200491&pageIndex=1>